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6월 2일
- 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노상욱)

- 가. 제안이유
 -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 및 조성됨에 따라 조례 제3조 관련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 현행화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 제3조(체육시설의 설치)와 관련하여 [별표1]의 '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에 총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주요 내용으로
 -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·조성됨에 따라, [별표1]의 체육시설 현황자료에서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포함한 총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 △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6월 4일부터 운영 중이며, △영등포구 실내 게이트볼장은 옛 신길3동 주민센터 2층에 조성, △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

점은 신길3동 주민센터 신청사에 조성하여 6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임. 또한, 안 제2조에 서는 “사람 또는 초등학생/ 사람 또는 중·고등학생”을 “사람”으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신규 건립 및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의거하여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, 신규 등재되는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「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」 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에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이 1호점에서 3호점까지 포함되어 있음. 두 안건이 동일한 시기에 제출된 것을 고려하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사항 및 동의안의 위탁시설 현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여겨짐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3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6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실내 공공체육시설이 신규로 건립 및 조성됨에 따라 조례 제3조 관련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3조(체육시설의 설치)와 관련하여 [별표 1]의 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’에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3) 인권영향평가: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

- 상기 검토 결과 반영하여 용어 변경

- (변경 전) “어린이”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, 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·고등학생을 말한다.

- (변경 후) “어린이”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, 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라. 입법예고(2025. 5. 1.~5. 21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사람 또는 초등학생을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사람 또는 중·고등학생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란 다음에 신길책마루문화센터란, 영등포구 실내게이트볼장란,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길책마루문화센터	영등포구 신길로 131(신길동)	지하 2층/지상 5층 연면적 7,471m ²	도서관, 수영장, 체육관
영등포구 실내게이트볼장	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-8(신길동)	237m ²	게이트볼장 1면
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	영등포구 가마산로 483 (신길동)	91m ²	실내파크골프장 2타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어린이”란 6세 이상 12세 이 하의 <u>사람</u> 또는 <u>초등학생</u> 을,	6. ----- -- <u>사람</u> ----- -----
“청소년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<u>사람</u> 또는 <u>중·고등학 생</u> 을 말한다.	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.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